

무역상무연구
제67권
2015. 8, pp. 119~142.

논문접수일 2015. 07. 31.
심사완료일 2015. 08. 19.
게재확정일 2015. 08. 20.

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심으로 -

신 건 훈*

-
- I. 서 론
 - II.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현행 영국 보험법의 입장
 - III. 영국 법률위원회의 주요 개혁권고안
 - IV. 결 론
-

주제어 : 법률위원회,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 사기적인 행위, 보험법개혁,
권리박탈원칙, 공서에 관한 법원칙, 선의, 계약취소

I. 서 론

보험제도는 단체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 사이에 위험을 분산하려는 사회·경제적인 제도로서 오늘날 사회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성을 갖는 보험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험자는 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보험계약자는 끊임없이 사기의 유혹에 빠진다. 보험사기는 보험산업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선진국의 보험업계 및 보험당국은 보험사기의 현황 및 여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보험사기의 폐해를

*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E-Mail : gunhoon1@gnu.ac.kr

강조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에 관한 별도의 법률 및 판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개념이나 보험사기의 효과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연구문헌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영국의 경우, 보험사기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판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특히 보험사기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관한 판례법의 입장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태이다.

한편 다양한 보험사기의 유형 중에서 고의적인 사고의 유발은 형법 상 사기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서 인식되지만,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즉 진정한 손해를 입었으나 보험청구액을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사회적으로 관대하게 용인되는 보험사기의 유형으로서 거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자행되는 보험사기의 유형이다. 최근 영국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판례법원칙이 불필요할 정도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 및 보험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형법보다는 민법이 사기의 억지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성문법을 제정함으로써, 판례법의 불확실성 제거, 일관된 법원칙 도출 및 법률의 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보험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고, 법률의 사기억지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특히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최근 법률의 개혁권고안 및 입법 초안을 발표하였다. 법률위원회가 작성한 입법 초안은 2014년 7월 영국 의회에 입법안으로 상정되었고, 입법 초안을 토대로 작성된 개정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 2015년 2월 12일자로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었고, 2016년 8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관한 법률의 개혁과 관련하여 영국 법률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준비한 일련의 보고서¹⁾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개혁권고안 및 입법 초안의 법률적 의미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보험사기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입법정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1)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 Issues Paper 7, 2010. 7(이하에서는 IP 7이라 칭한다)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Consultation Paper No. 201(LCCP 201), 2011. 12(이하에서는 LC 201이라 칭한다)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Remedies; and Late Payment*(Law Com. No. 353), 2014. 7(이하에서는 LC 353이라 칭한다).

II.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현행 영국 보험법의 입장

1. 보험사기 현황

보험사기는 보험업이 개시된 이래로 항상 보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평균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불가피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

보험과 관련하여 살인이나 방화 등과 같이 고의적인 사고의 유발에 기인한 사기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발생한 사고에 기인한 보험청구액의 과장과 같은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과 관련하여 *Galloway v. Guardian Royal Exchange (UK) Ltd.* 사건²⁾에서 Millet LJ는 “부당한 보험금청구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 보험자는 ‘손쉬운 사냥감’(fair game)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보험자를 기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보험금청구액의 과장에 대한 영국 사회의 관대한 인식을 지적하였으며, 캠브리지 대학의 M. Clarke 교수는 보험사기가 보험자를 ‘손쉬운 사냥감’으로 정한 ‘국민적인 스포츠’라고 표현하기도 한다.³⁾ 최근에 발표된 영국 보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 ABI)의 소비자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설문응답자 중 42%의 응답자는 보험사기가 쉽고 신속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응답하였고, 27%의 응답자는 사기에 대한 처벌수준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⁴⁾

이러한 보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보험업계 및 관련 당국은 보험사기의 부작용에 관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보험사기의 폐해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최근 소비자들은 보험사기가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피

2) [1999] Lloyd's Rep. 209, 214.

3) M. Clarke, *Policies and Perceptions of Insurance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Univ. Press, 2005, pp. 200~201 ; 신건훈, “영국 보험법 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의 유형 및 효과”, 무역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3, pp. 224~227 참조.

4) ABI, *Quarterly Consumer Survey 2012 Q4*, 2013. 5. ; LC 353, para. 19.2.

해를 입히는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보험사기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에 실제로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5,997억원에 달하며, 관련 혐의자는 84,3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금액 면에서 15.6%, 관련 혐의자 면에서 9.4% 증가한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표 1] 참조).⁵⁾ 한편 보험개발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6년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를 포함한 보험사기 규모는 2조 2,303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액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4만 6,024원, 1가구당 13만 7,758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⁶⁾

<표 1> 한국의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률(%)
적발 금액	생명보험	63,403	74,347	87,708	18.0
	손해보험	389,932	444,613	512,021	15.2
	자동차	273,755	282,140	300,793	6.6
	장기손보	103,534	145,090	179,349	23.6
	소 계	453,335	518,960	599,729	15.6
적발 인원	생명보험	4,900	4,128	5,832	41.3
	손해보험	78,281	72,984	78,553	7.6
	자동차	60,821	56,617	61,218	8.1
	장기손보	16,414	15,549	16,220	4.3
	소 계	83,181	77,112	84,385	9.4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조사국 보도자료(배포일 2015년 4월 1일), p. 2.

한편 보험사기 규모의 증가 추세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영국 보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 ABI)의 발표에 의하면, 2013년 118,500건의 보험금청구가 사기에 기인하여 지급거절되었으며, 이는 금액 면에서 £130억에 달한다.⁷⁾ 또한 ABI는 금액 면에서 약 £20억에 달하는 보험사기가 적발되지 않는다고 추정하며, 이는 보험계약체결 건 당 평균 £50의 보험료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⁸⁾

5)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보도자료(배포일 2015년 4월 1일).

6) 보험개발원, 보험뉴스(2009년 1월 20일자) ; 신학용, “보험사기의 심각성 및 보험사기 금지규정 신설의 의의”, 손해보험 2008. 3, p. 7 ; 신건훈, 전계 논문, p. 222 참조.

7) ABI, “Insurance cheats feel the heat-value of fraudulent claims uncovered by insurers hit record levels”(30 May 2014, <http://www.abi.org.uk/News/>).

2. 영국 판례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효과

1) 보험계약 상 명시적인 사기조항이 있는 경우

대다수 보험증권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관계되는 명시조항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조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사기적인 동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며, 사기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제수단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되어 왔다.⁹⁾ 예를 들면, *Insurance Corporation of the Channel Islands Ltd. v. McHugh* 사건¹⁰⁾에서 사기조항은 “사기 -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가 사기적인 경우, 또는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특정인이 보험계약 상 특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기적인 계약이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 또는 묵인에 기인하여 파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상 일체의 편익(all benefits)은 박탈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Mance J*는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체 편익의 박탈”이라는 문언은 사기가 개입된 보험금청구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보험계약 상 편익을 박탈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¹¹⁾ 이러한 판결과 관련하여 “일체 편익의 박탈”은 다소 불확실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이 판결의 의미는 사기가 개입된 당해 청구권 및 사기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 청구권의 박탈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자가 당해 청구권 및 사기 이후의 청구권에 대한 박탈뿐만 아니라, 사기 이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급적인 효과를 갖는 청구권의 박탈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즉, “보험계약 상 일체 편익의 박탈”이란 문언은 사기가 개입된 현재의 청구권 및 사기 이후의 청구권에 대해서만 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현재 및 미래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갖는 구제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를 내포한다.

한편 보험계약 상 명시적인 사기조항이 판례법 상 허용되는 구제수단보다 가혹한 구제수단을 설정하거나, 반대로 사기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계약조항의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영국 법률 상 계약당사

8) ABI Report, *No Hiding Place ; Insurance Fraud Exposed*, 2012.

9) 과거의 사기조항에서 언급되어 온 구제수단은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의 박탈, 사기를 행한 시점으로부터 보험계약 상 일체 편익의 박탈, 보험금청구일로부터 보험계약 상 일체 편익의 박탈 및 계약체결시점으로 소급한 일체 편익의 박탈 등 다양하게 규정되어 왔다(*Johanna Hjalmarsson*, “The law o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JBL*, 2013. 1, p. 106).

10) [1997] 1 LRLR 94, 98.

11) *Ibid.*, 135.

자가 합의에 의하여 판례법 상 제공되는 구제수단보다 가혹한 구제수단(예를 들면, 소급효를 갖는 구제수단)을 설정하는 계약조항의 효력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명시조항은 분명한 취지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또한 소비자보험의 경우, 사기조항은 “1999년 소비자보험계약 상 불공정조항에 관한 규정”(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s 1999)의 적용을 받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계약조항이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가혹한 계약조항이 보험계약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못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무효로 취급된다. 둘째, 영국 판례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책임을 배제하는 명시조항의 효력문제를 취급한 판례는 없으나, 공서의 원칙에 의거해 볼 때,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사기에 기인한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¹²⁾

2) 보험계약 상 명시적인 사기조항이 부재한 경우

(1)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사기방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구제수단

보험계약 상 사기에 관한 특정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영국 법원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문제점은 당해 의무의 법적 근거 및 구제수단에 관한 판례법 원칙이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을 상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의 원천이 된다는 점이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판례법의 입장을 검토하고, 판례법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¹³⁾

① 묵시계약조항의 위반

Orakpo v. Barclays Insurance Services Co. Ltd. 사건¹⁴⁾의 경우, 보험계약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취급하는 명시조항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법원의 다수 판사는 보험계약 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시적인 사기조항과 유사한 계약조항이 보험계약에 묵시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offmann LJ*는 “동일한 취지의 명시조항이 보험계약에 삽입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취지의 명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 상, *Britton v. The Royal Insurance Co.* 사건과 관련한 *Willes J*의 언급은... 그러한 조항이 법률에 의거하여 묵시되어 있다고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한다. 즉, 반대되는 약정의 부재 시 동일한 묵시조항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

12) IP 7, paras. 4.10-4.15.

13) IP 7, paras. 4.18-4.46 참조.

14) [1994] CLC 373.

적이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¹⁵⁾ 또한 Sir Roger Parker는 그러한 묵시계약조항이 “원칙 및 선례에 의거하여” 존재한다며 공감을 표명하면서, 사기에 대한 구제수단이 전체 계약의 취소라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의 판사는 법의 운용(operation of law)에 의하여 선의로서 행동해야 할 의무가 계약 상 묵시되어 있으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묵시적인 선의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제수단은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라고 결론내렸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방지의무에 대한 묵시계약조항의 존재는 *Royal Boskalis Westminster* 사건¹⁶⁾ 및 *The Captain Panagos DP* 사건¹⁷⁾에 대한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② 보험법 상 선의의무의 위반

일부 판례에서 보험자는 MIA 1906 제17조를 직접적으로 원용함으로써,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되었다.¹⁸⁾ 예를 들면, *The Litsion Pride* 사건¹⁹⁾에서 보험계약 상 피보험선박이 페르시아만과 같은 전쟁위험해역에 진입하는 경우에 담보위반을 구성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커버가 유지된다는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선주는 막대한 추가보험료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사기적인 의도로서 보험자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전쟁위험해역에 진입하였다. 피보험선박이 전쟁위험해역에서 이라크 미사일에 의하여 격침된 후, 선주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Hirst J는 “최대선의의무는 계약체결 후에도 완전한 효력을 갖는 상태에서 담보조항에서 규정하는 항해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된다... 계약체결 전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부실표시 및 불고지에 대하여 확대적용된다”고 언급하면서,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체결 전 선의의무와 유사한 수준의 선의의무가 존속한다고 인식하였으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MIA 1906 제17조에 규정하는 최대선의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며, 따라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은 소급효를 갖는 계약취소권이라고 판결하였다.²⁰⁾

15) *Ibid.*, 383.

16) *Royal Boskalis Westminster NV v. Mountain* [1997] LRLR 523, 593 및 597.

17)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 v. Alliance Assurance Co. Ltd.(The Captain Panagos DP)* [1986] 2 Lloyd's Rep. 470, 512.

18) 예를 들면, *Ewer v. National Employers Mutual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1937] 2 All E.R. 247 ; *Piermay Shipping Co. S.A. & Brandt's Ltd. v. Chester(The Michael)* [1979] 1 Lloyd's Rep. 55 ; *Black King Shipping Corporation v. Massie(The Litsion Pride)* [1985] 1 Lloyd's Rep. 437 ; *Continental Illinois National Bank of Chicago v. Alliance Assurance Co. Ltd.(The Captain Panagos)* [1986] 2 Lloyd's Rep. 470.

19) *Black King Shipping Corporation v. Massie(The Litsion Pride)* [1985] 1 Lloyd's Rep. 437.

20) *Ibid.*, 512.

③ 보통법 상 공서원칙의 위반

전술한 *Orakpo* 사건 및 *Litsion Pride* 사건에 대한 상기 판결은 *The Star Sea* 사건²¹⁾에 대한 상원의 판결 결과, 더 이상 유효한 선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상원의 판사는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사기방지의무는 묵시계약조항이 아니라 일반계약법원칙에 근거한 의무라고 규정하였고, 또한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적용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보험자의 구제수단으로서 소급적인 취소권의 허용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상원의 Lord Hobhouse는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방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Orakpo* 사건에서 채택된 계약적 분석법(contractual analysis)이 완전한 권위를 가진 판례법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이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라는 견해를 비판하였다.²²⁾

한편 *The Star Sea*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의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해졌으나, 의무의 법적 근거 및 구제수단에 관한 불확실성 문제는 후속하는 판례에서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겨졌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Agapitos v. Agnew(The Aegeon)* 사건²³⁾에서 Mance LJ는 *The Star Sea* 사건에 후속하여 의무의 법적 근거 및 구제수단에 관한 법원칙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관련 법원칙의 규명과 관련하여 Mance LJ는 “지난 20여년 동안 다수의 보험소송이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적용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반복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이었다. 관련 법원칙이 일반계약법에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MIA 1906 제17조 상 최대선의라는 보험법원칙에 근거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은 제17조 상 취소라는 구제수단의 가혹성과 연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분석이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후속하여 *The Star Sea* 사건의 논거는 취소라는 구제수단의 엄격성을 회피하려는 시도의 결과이며, 이로 인하여 법리의 복잡성 및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Mance LJ는 현행 법률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MIA 1906 제17조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법 상 가능한 3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²⁴⁾ 즉, 첫째, 법원이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MIA 1906 제17조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일부 판례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구제수단으로서 소급효를 갖는 계약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이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

21)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 and Others(The Star Sea)* [2001] UKHL 1 ; [2003] 1 AC 469, 62-66.

22) IP 7, para. 4.22.

23) *Agapitos and Another v. Agnew and Others (No. 1) (The Aegeon)* [2002] EWCA Civ. 247 ; [2003] QB 556, 1.

24) IP 7, para. 4.41.

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취소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이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MIA 1906 제17조 상 선의의무 위반의 범주에서 배제한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Mance LJ는 “MIA 1906 제17조에 구속되어 있는 현재의 불완전한 법률상태에서 판사의 잠정적인 견해는 선의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일반계약법원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구제수단으로서 소급적인 취소의 가혹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²⁵⁾ 잠정적으로 세 번째 접근법, 즉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MIA 1906 제17조의 적용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결과적으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이 전체 청구권의 박탈이라는 영국 법원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²⁶⁾

학계에서도 이 판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학자에 따라 다소 엇갈리는 해석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MacGillivray의 경우, “보험자의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2가지 별개의 보험법원칙이 존재하고, 보험자는 구제수단으로서 2개의 구제수단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고 해석한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Mance LJ가 언급한 계약법원칙은 보험법원칙인 선의원칙과 병행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보험자는 2가지 원칙 중 한가지 원칙을 선택함으로써, 2가지 구제수단 중 한가지 구제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자가 보험법원칙인 선의원칙을 채택하는 경우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계약법원칙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적인 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박탈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Clarke 교수는 상기 판결이 MIA 1906 제17조 상 선의원칙의 적용범주에서 사기적인 청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보험자가 구제수단으로서 청구권의 박탈 및 계약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분석에 의하면, 사기적인 청구에 기인하여 보험자의 소급적인 취소권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보험자는 사기 이전의 유효한 청구에 기인하여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²⁸⁾

25) *Agapitos and Another v. Agnew and Others (No. 1) (The Aegeon)* [2002] EWCA Civ. 247 ; [2003] QB 556, 45.

26) Johanna Hjalmarsson, “The law o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JBL*, 2013. 1, p.104.

27) N. Legh-Jones, *MacGillivray on Insurance Law*(11th edn.), Sweet & Maxwell, 2008, para. 19-055.

28) M.A.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4th edn.), LLP, 2002, para. 27-2C3.

(2) 사기 전후 계약의 효력에 대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효과

① 사기 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효과

Agapitos v. Agnew(The Aegeon) 사건²⁹⁾에서 Mance LJ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은 MIA 1906 제17조 상 계약의 취소가 아니라,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의 박탈이라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³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MIA 1906에 근거한 선의의무 간 상관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으나,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적용되는 구제수단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후속하는 *Axa General Insurance Ltd. v. Gottlieb* 사건³¹⁾에서 Mance LJ는 재차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MIA 1906 제17조와 무관한 공서의 원칙(public policy rule)³²⁾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보통법원칙”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Gottlieb 부부는 건물에 대한 재산보험계약 하에서 동일한 보험기간동안 4건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자는 사기가 개입되지 않은 초기 2건의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사기가 개입된 2건의 보험금청구에 대해서도 사기사실을 발각하기 전에 보험금을 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보험자는 사기가 개입된 2건의 보험사고뿐만 아니라, 사기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2건의 보험사고를 포함한 총 4건의 사고에 대하여 기지급한 일체의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법원은 사기가 개입된 2건의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지급한 일체의 보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결하였으나, 사기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유효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지 못하며, 따라서 사기 이전의 유효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제수단

29) [2002] 2 Lloyd's Rep.42.

30) *Britton v. Royal Insurance & Co.* 사건에서 Willes J는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사기를 행하도록 허용하고, 이후 보험금청구단계에서 사기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제손해액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보험금청구단계에서 고의적인 사기가 존재한다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상 일체의 청구권을 박탈당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초창기 판례법의 입장 및 법률정책의 배경을 제공한다. 이는 오래 전부터 판례법원칙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에 징벌적인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징벌적인 요인이 사기를 억지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되었다(Johanna Hjalmarsson, *op. cit.*, p. 105).

31) [2005] EWCA Civ. 112 ; [2005] 1 All ER(Comm.) 445, 31.

32) 공서의 원칙(public policy rule)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의적인 부정행위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용인되어서는 안된다”(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는 보통법원칙이다(A. Naidoo and D. Oughton, “The Confused Post-Formation Duty of Good Faith in Insurance Law : From Refinement to Fragmentation to Elimination”, [2005] JBL, p. 368 ; 신건훈, 전계 논문(2007), p. 111).

은 해당 보험금청구에 관한 한, 진정한 청구분을 포함한 전체 청구권의 박탈이지만, *Mance LJ*가 적용한 “특별한 보통법원칙”에 근거할 때, 사기가 발견되기 전에 동일한 보험계약 하에서 정산되고, 또한 사기와 무관한 청구권에 대하여 소급적인 효과를 적용해야 할 근거 또는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³³⁾ 이러한 영국 법원의 입장은 적법하고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 법원이 계약이행단계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소급적인 구제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정통성이 부족하며,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② 사기 이후의 청구권에 대한 효과

진술하였듯이 영국 판례법의 입장에서 볼 때,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사기 이전의 유효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사기 이후의 청구권에 대한 사기의 효과에 관한 영국 판례법의 입장은 보다 불명확하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인 세대주가 홍수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손해가 조사되는 도중에 가옥이 화재로 인하여 진정한 손해를 입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전의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기인하여 피보험자는 후속하여 발생한 진정한 청구권을 박탈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기 이후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청구권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법의 입장이 불명확하다.

일반계약법 상 계약의 위반 또는 이행불능이 객관적으로 중요하고 실질적이지 않은 한, 계약의 종료권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선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법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더욱이 최대선의를 요하는 보험계약에서 일체의 사기는 계약의 근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종료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³⁴⁾

그러나 영국 판례법 상 계약종료권의 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해석방법으로서 이론 상 가능한 2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³⁵⁾ 즉, 첫째,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계약위반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종료권을 부여하지만, 보험계약의 효력은 계약종료권의 선택시점까지 존속되고, 사기가 행하여진 일자와 계약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의 효력은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기가 계약을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기가 행하여진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며, 따라서 사기시점부터 계약종료일까지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33) IP 7, paras. 4.49-4.50.

34) M. Clarke, *op. cit.*, 2005, p. 207 ; 신건훈, 전제 논문(2007), pp. 112-113.

35) IP 7, paras. 4.58-4.60.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을 제공해줄 수 있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The Star Sea* 사건, *Axa* 사건 및 *Fargnoli* 사건에 대한 판결의 논리는 명확하다. 즉, 사기가 자동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에 대하여 면책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The Star Sea* 사건³⁶⁾에서 Lord Hobhouse는 구제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사기는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고,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종료권을 부여하며, 계약의 종료 및 보험자 면책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념이라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영국 판례법의 입장은 보험자가 종료권을 행사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존속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현행 영국 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정의 필요성

보험계약 상 명시적인 사기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국 법원은 명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소비자보험의 경우 명시조항에서 규정하는 구제수단이 판례법원칙보다 다소 가혹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계약 상 사기에 관한 명시조항이 부재한 경우로서 진술하였듯이, 영국 법원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관한 법원칙, 특히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국 판례법 상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사기방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법원칙은 다소 불확실하다. 즉,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보험법원칙인 선의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구제수단은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이고, 공서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구제수단은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 및 사기 이후의 청구권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이다.

영국 법원은 소급효를 갖는 계약취소가 계약체결 전단계에서 초래되는 선의의무의 위반(예를 들면, 고지의무의 위반)에 적용되는 구제수단으로서 유효하고 합리적인 구제수단이라고 판단하지만,³⁷⁾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는 합리적인 구제수단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의의무가 원칙적으로 상호적인 의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

36)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 and Others(The Star Sea)* [2001] UKHL 1 ; [2003] 1 AC 469, 110.

37) 영국 보험법 상 계약의 취소는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구제수단이며, 소급적인 효력을 갖는 구제수단으로서 계약당사자를 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기인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기 이전의 진정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부담자는 피보험자이고 계약취소라는 구제수단의 이익을 향유하는 당사자는 단지 보험자이기 때문에 계약취소라는 다소 가혹한 구제수단이 실질적으로 계약관계의 비형평성·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⁸⁾

전술하였듯이 최근 영국 법원은 계약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보험법원칙인 선의원칙을 배제하고, 그 대안으로서 일반계약법원칙인 공서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의 취소가 초래하는 불합리성 및 계약관계의 비형평성·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판례법원칙이 완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의원칙의 적용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따라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사실상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사기방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이행단계에서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선의의무의 대표적인 일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영국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소급적인 효력을 갖는 취소를 배제하려는 영국 법원의 입장이 비교적 공정한 법원칙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법률의 일관성이 상실되었으며, 지나치게 복잡한 법원칙을 창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한다.³⁹⁾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비일관성 및 복잡성이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MIA 1906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의 취소가 판례법의 탄력적인 발전을 부당하게 제약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법률위원회의 견해와 유사하게 Thomas 교수는 “개별적인 분쟁에 대하여 맞춤형 해결능력을 갖고 있는 보통법의 전통적인 융통성이 MIA 1906 제17조에 명문화된 선의원칙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다... 제정법 상 선의의무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 보다 탄력적으로 규정되었더라면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관한 현행 법률의 윤곽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명백해졌을 것이라는데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⁴⁰⁾ Davey 교수는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발아상태의 법원칙들이 그대로 고착화되어 버렸다”고 언급하면서, 1906년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해상보험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⁴¹⁾

따라서 영국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38) 신건훈, 전계 논문(2007), p. 110.

39) IP 7, para. 4.76.

40) D. Rhidian Thomas, “Fraudulent Insurance Claims : definition, consequences and limitations”, (2009) *LMCLQ* 485, p. 515.

41) James Davey, “Unpicking the fraudulent claims jurisdi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 sympathy for the devil?”, (2006) *LMCLQ* 223, p. 228.

영국 판례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법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법률 개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⁴²⁾ 첫째, 보통 법원칙과 MIA 1906 제17조의 괴리가 창출하는 법률의 복잡성 및 비밀관성이 불필요한 보험분쟁 및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다. 둘째,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원칙이 사기의 억지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원칙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용이하며, 특히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징벌적인 요소의 내용이 법률상 명확하게 정립되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보험법은 해외고객에 대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관련 법원칙의 복잡성은 국제보험업계에서 영국 법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보험법을 일치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이 유럽보험시장 및 국제보험시장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자 원한다면, 일관된 법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보험법을 발전시켜야만 할 필요가 있다.

III. 영국 법률위원회의 주요 개혁권고안

1. 서언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효과에 대한 현행 영국 법률의 입장은 상당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당해 청구권의 박탈 및 장래에 대한 계약종료권을 인정하는 판례법원칙과 선의의무의 위반에 근거하여 소급효를 갖는 계약의 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법원칙 사이에 상충요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2가지 법원칙의 존재는 2가지 쟁점, 즉 (1) 사기 이전의 진정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책임에 대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효과, (2) 사기가 행하여진 이후부터 계약종료권을 행사하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효과에 대한 법률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⁴³⁾

한편 법률위원회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법률의 포괄적·완전한 개정을 의도하

42) IP 7, S.20, paras. 4.79-4.80 및 paras. 7.1-7.3 참조.

43) The Law Commission(Law Com. No. 353) and The Scottish law Commission(Scot. Law Com. No.234),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d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2014. 7(이하에서는 LC 353이라고 칭한다), para. 22.2.

지는 않기 때문에 법률위원회가 제시한 법률초안에서는 사기의 정의 및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판례법의 역할로 남겨 둔다. 법률위원회가 초점을 두고 있는 개혁권고안의 핵심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법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즉, 구제수단으로서 선의원칙에 근거한 계약의 취소를 배제하고, 청구권의 박탈이라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⁴⁴⁾

영국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소급적인 취소권은 무원칙적·실행불가능한 구제수단이며, 피보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⁴⁵⁾ 다음과 같은 성문법의 제정을 권고한다.⁴⁶⁾ 즉, (1) 보험자는 사기적인 청구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보험자는 사기 이후에 발생한 일체의 청구에 대한 지급거절권을 행사한다. (3) 보험자는 사기 이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 및 입법 초안을 토대로 개혁권고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전체 청구권의 박탈

사기가 개입된 보험금청구에 관한 한, 구제수단은 사기가 자행되지 않았더라면 합법적이고 진정한 손해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한 전체 청구권의 박탈이라는 것이 영국 판례법의 입장이다.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Shipping Co. Ltd. (The Star Sea)* 사건⁴⁷⁾에서 상원의 Lord Hobhouse는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는 진정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도 상실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의 입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일부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이 과다청구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사기에 의한 청구분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청구분에 대한 권리도 상실한다는 법원칙을 확정하였다. 또한 Lord Hobhouse는 이러한 법원칙의 설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원칙에 대한 논거는 단순하다. 사기를 자행한 피보험자가 사기에 성공하는 경우에 이익을 얻고, 실패하는 경우에도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면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영국 법원의 법률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Lord Hobhouse가 제시한 법원칙은 “사기는

44) *Ibid.*, paras. 19.6-19.7

45) LC 201, paras. 7.9-7.16.

46) LC 353, para. 19.4.

47) [2001] UKHL 1 ; [2003] 1 AC 469, 499.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fraus omnia corrumpit ; fraus omnia vitiat : fraud vitiates everything)는 일반계약법 상 공서의 원칙에 기초한다.⁴⁸⁾

입법 초안 제12조 (1)항 (a)호에서는 이러한 판례법의 입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계약 하에서 피보험자가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James Davey 및 Katie Richards 교수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Lord Mance에 의하여 발전된 판례법원칙인 ‘청구권박탈원칙’(forfeiture rule)을 제정법화하려는 광범위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제12조는 일체의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해당 청구권 전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사기 이전의 합법적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례법 상 가정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사실상 이 조항은 사기가 개입된 청구에 관한 한, 청구권의 박탈이라는 판례법원칙을 제정법에 도입하는 것이며, 구체수단은 보험자의 관점에서 묘사된 조항이다.⁴⁹⁾

입법 초안 제12조 (1)항 (a)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국 법원은 사기가 개입된 보험금청구에 관한 한, “전체 청구권”(whole claim)의 박탈이라는 구체수단을 적용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예를 들면, 건물 및 부속재산을 커버하는 보험계약 하에서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고, 피보험자가 건물손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부속재산에 대한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액을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금의 청구시기가 상이할 수 있다. 즉, 건물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에 부속재산에 대한 보험금청구가 손해액을 과장한 상태에서 행하여지고, 각각의 청구는 별개의 청구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에서 2건의 보험금청구는 단일 사고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단일 청구로 간주되고,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효과로서 전체 청구권은 박탈된다. 특히 영국 법원은 보험금청구가 상이한 원인에 의하여 제기되더라도, 동일한 사고에 기인한 경우, 단일 청구 또는 전체 청구권의 개념을 확대적용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⁵⁰⁾

한편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체수단은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적인 문제는 없으나, 입법 초안에서 “전체 청구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탈되는 전체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석 상 논

48) Malcolm A. Clarke, Julian M Burling & Robert L. Purves,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4th edn.), LLP, 2002, pp. 896-897 ; 신건훈, 전계 논문(2010), p. 239 참조.

49) LC 353, paras. 23.9-23.10.

50) *Ibid.*, paras. 23.12-23.13.

쟁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의 부재와 관련하여 영국 보험자협회(ABI)는 “‘전체 청구권’의 개념정의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의존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정법 상 포괄적인 정의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함으로써, 법률위원회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으나,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전체 청구권’의 의미 및 적용범위는 법원이 개별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접근법이 해당 법률영역의 발전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⁵¹⁾

다른 한편으로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은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입법초안 제12조 (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하에서 사기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 구제수단이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은 책임보험계약 하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행하는 사기적인 피해액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파산하고 피보험자의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입법초안에서는 제3자가 단지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권리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피보험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에 대하여 사기적인 의도로써 보험금을 과장청구한 제3자는 전체 청구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⁵²⁾

3. 사기 전후 계약의 효력에 대한 효과

1) 사기 이전의 유효한 청구권에 대한 효과

영국 법률위원회는 판례법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사기 이전의 유효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권고한다. 따라서 사기적인 행위를 자행하기 이전에 입은 진정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후속하는 사기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으며, 유효한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보험자가 사기에 근거하여 후술하는 계약종료권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진정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사기 이전의 진정한 청구권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원칙에 위배되며, 계약당사자의 이익균형을 훼손

51) *Ibid.*, para. 23.17.

52) *Ibid.*, paras. 23.3-23.5.

할 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다.⁵³⁾

한편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가 사기적인 행위 이후에 행하여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고(손해)가 사기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행사하는 보험금청구권의 유효성은 보험금의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보험사고의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선택에 의한 계약종료권

(1) 사기적인 행위의 개념

입법 초안 제12조 (1)항 (c)호에서는 보험자가 “사기적인 행위(fraudulent act)를 자행한 시점으로 소급되는 효력을 갖는 계약종료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fraudulent claim)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기적인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법률위원회의 설명에 의하면,⁵⁴⁾ 사기적인 행위는 당해 청구를 사기적인 청구로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전체 청구를 의미하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1월에 진정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3월에 사기적인 요소가 추가된 경우, 1월에 제기한 보험금청구는 사기적인 청구로 귀결되지만, “사기적인 행위”는 3월에 발생한 것으로 된다. 이러한 시점은 최초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일 수도 있고, 보험금청구가 2-3회에 걸쳐서 청구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청구시점보다 이후의 시점일 수 있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사기가 일련의 행위로 구성되는 경우, 사기적인 행위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 중 첫 번째 행위가 자행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한편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행위”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며, 사기적인 행위의 정확한 발생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법원이 새로운 개념의 도입에 기인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문제의 판단은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한다. 법률위원회는 영국 법원이 당해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식 수준에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⁵⁵⁾

53) *Ibid.*, paras. 23.53-23.54.

54) *Ibid.*, paras. 23.36-23.37.

55) *Ibid.*, paras. 23.33-23.35.

(2) 계약종료선택권

법률위원회는 사기가 자행된 시점 이후의 보험계약의 효력에 대한 사기의 효과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사기를 자행한 피보험자와의 계약관계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일부 비평가는 계약종료권의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법이 있을 수 있으며, 제정법 상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3가지 해석법이 존재할 수 있다. 첫째, 보험자가 사기를 발각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둘째, 보험자가 사기를 발각함과 동시에 계약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종료권의 효력은 사기가 자행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자가 사기를 발각한 시점 이후의 장래에 대한 계약종료권의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입법 초안 제12조 (1)항 (c)호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당해 계약의 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종료권은 사기적인 행위를 자행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상기 3가지 해석법 중에서 두 번째 해석법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 법률위원회가 권고하는 계약종료권은 사기적인 행위를 자행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구체수단이다.⁵⁶⁾ 따라서 사기적인 행위가 개입된 보험금청구 이후부터 보험자가 사기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종료권을 선택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진정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사기적인 행위시점으로 소급하여 보험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둘째, 법률위원회가 제안하는 계약종료권은 자동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선택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법률위원회는 보험자가 보통 사기를 인지한 이후에 해당 피보험자와의 계약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지만, 보험자의 선택이 권리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보험

56) 이전의 쟁점검토보고서에서 법률위원회는 사기를 행한 시점으로부터 계약종료권의 선택시점까지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러한 접근법이 계약의 효력은 종료 후에 소멸한다는 일반계약법원칙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회에 상정하는 최종보고서인 LC 353에서 법률위원회는 사기시점까지 소급효를 갖는 계약종료권을 선택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보다 가혹한 구체수단을 상정하였다(IP 7, paras. 7.36-7.37). 이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첫째, 원칙의 문제로서 피보험자의 사기행위는 계약관계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보험자의 의무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둘째, 실제적인 문제로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보험자의 조급한 사기주장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였다(LC 201, paras. 7.18-7.21 참조).

자가 기인한 계약종료권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사기적인 행위 이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 상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보험자가 계약종료권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자는 사기적인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권의 부여가 계약종료권에 대한 개혁권고안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4. 구제수단의 적용례

법률위원회가 제안하는 구제수단의 적용방법을 일례, 즉 피보험자가 건물 및 부속재산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를 상정하여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⁵⁸⁾ 이러한 예시는 사기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별개인 2개의 법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예증한다. 첫째, 사기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청구권의 박탈이 적용된다.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이 박탈되지만, 사기가 사기 이전의 유효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사기적인 행위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효과로서, 보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계약의 종료권은 사기적인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되는 효과를 갖는다.

* 구제수단의 적용례

1. 일련의 사고발생에 대한 보험금청구

- (1) 1월 : (보험계약 상 커버되는 보험사고인)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는 건물 손상에 대하여 진정한 보험금청구를 제기한다.
- (2) 2월 : (보험계약 상 커버되는 보험사고인) 홍수손해가 발생한다.
- (3) 3월 : 피보험자는 1월의 화재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와 별개로 부속재산의 손해와 관련하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하고, 이는 “사기적인 행위”로 귀결된다.
- (4) 4월 : (보험계약 상 커버되는 보험사고인) 도난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는 도난손해와 관련하여 진정한 보험금청구를 제기한다. 또한 피보험자는 2월의 홍수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진정한 보험금청구를 제기한다.
- (5) 5월 : 보험자는 3월의 사기적인 행위를 발각한다.

57) LC 353, paras. 23.29-23.30.

58) *Ibid.*, paras. 23.57-23.58 참조.

2. 사기적인 행위가 청구권 및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 (1) 3월의 “사기적인 행위”에 기인하여, 1월의 화재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박탈당한다. 보험자는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2) (2월에 발생하고, 4월에 보상청구된) 홍수에 대한 청구권은 유효하며,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해 손해는 사기적인 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따라서 보험자의 선택에 의한 계약종료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이기 때문이다.
- (3) 사기를 발각한 즉시, 보험자가 제12조 (1)항 (c)호 상 계약종료권의 행사를 선택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경우, 보험계약은 3월의 사기적인 행위의 발생시점부터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4월에 발생하고 보상청구된 도난손해는 계약의 종료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보험자는 도난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IV. 결 론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구선진국의 보험업계 및 보험당국은 보험사기의 폐해를 강조하고 있고,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특히,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영국의 판례법원칙이 지나치게 복잡하며, 다소 일관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다. 법률위원회는 해당 법률의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개혁권고안 및 입법 초안을 영국 의회에 제시하였고, 이 입법안은 2016년 8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법률의 복잡성 및 비일관성을 해소하고, 법률의 사기억지기능을 제고하며, 국제보험사회에서 영국 법률의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국 법률위원회가 제시하는 개혁권고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위원회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사기가 개입된 청구에 관한 한, 진정한 손해부분을 포함한 전체 청구권은 박탈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초안 상 전체 청구권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문제를 초래할 소지는 있으나, 영국 법률위원회는 법원이 개별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사기 이전의 유효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사기 이전의 진정한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후속하는 사기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으며, 유효한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유효성은 보험금의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험사고의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기 이후의 계약의 효력에 관한 사기적인 청구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보험자가 계약종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보험자의 종료권은 작동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선택 및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행사가능한 권리이며, 보험자가 일단 종료권을 선택하는 경우에 종료권의 효력은 사기적인 행위가 자행된 시점으로 소급되는 효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기에 관한 별도의 법률 및 판례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법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권고안 및 입법 초안의 의미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실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정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신건훈, “영국 보험법 상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의 유형 및 효과”, 무역연구 제6권 제1호, 한국무역연구원, 2010. 3.
- _____, “영국 보험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계약적 효과”,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 11.
- ABI, *Quarterly Consumer Survey 2012 Q4*, 2013. 5
- _____, “Insurance cheats feel the heat-value of fraudulent claims uncovered by insurers hit record levels”(30 May 2014)
- Clarke, M., *Policies and Perceptions of Insurance Law in the Twenty-First Century*, Oxford Univ. Press, 2005, pp.200-201
- _____, Julian M. Burling & Robert L. Purves,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4th ed.)*, LLP, 2002
- Davey, James, “Unpicking the fraudulent claims jurisdi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sympathy for the devil?”, *LMCLQ*, 2006
- Hjalmarsson, Johanna, “The law o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JBL*, 2013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 Issues Paper 7, 2010. 7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Consultation Paper No. 201(LCCP 201), 2011. 12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Remedies; and Late Payment*(Law Com. No. 353), 2014. 7
- Swaby, Gerald, “The price of a lie : discretionary flexibility in insurance fraud”, *JBL*, 2013
- Soyer, B., “Continuing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 still alive?” *LMCLQ*, 2003
- Thomas, D. Rhidia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 definition, consequences and limitations”, *LMCLQ*, 2006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s for Reforming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 -

Gun-Hoon SHIN

Many insurers have traditionally incorporated “fraud clauses” into insurance policies, setting out the consequences of making a fraudulent claim.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terms, English courts provide insurers with a remedy for a fraudulent claim. However, the law in this area is complex, convoluted and confused.

English Law Commission think that the law in this area needs to be reformed for three reasons: (1) the disjunctive between the common law rule and section 17 generates unnecessary disputes and litigation, (2) increasingly, UK commercial law must be justified to an international insurance society, and (3) the rules on fraudulent claims are functioned as a deterrent if they are clear and well-understood.

In order for these purposes, English Law Commission recommends a statutory regime to the effect that, when an insured commits fraud in relation to a claim, the insurer should (1) have no liability to pay the fraudulent claim and be able to recover any sums already paid in respect to the claim, and (2) have the option to treat the contract as having been terminated with from the time of the fraudulent act and, if chosen the option, be entitled to refuse all claims arising after the fraud, but (3) remain liable for legitimate losses before the fraudulent act. LC is not recommending a complete restatement of the law on insurance fraud generally. For example, LC does not seek to define fraud, instead, recommends the introduction of targeted provisions to confirm the remedies available to an insurer who discovers a fraud by a policyholder.

Keywords : Law Commission, Remedy for Fraudulent Claim, Fraudulent Act, Insurance Law Reform, Forfeiture Rule, Public Policy, Good Faith Avoidance